

믿을주는 소비자금융! 안심되는 소비자금융!

CLFA

한국대부금융협회

(100-070)서울시 중구 소월로10, 13층(남대문로5가, 단암빌딩) / TEL 02)3487-5800 / FAX 02)6670-9650 / www.clfa.or.kr

문서번호 : 기획조사-100

발신일자 : 2016. 10. 21.

수 신 : 수신처 참조

참 조 :

제 목 : 최소자본금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유의사항 안내

1. 서민금융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.

2. 개정 대부업법(16.7.25시행)에 따라 2017.1.26.까지 ① 대부업자는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, ②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이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.(단, 2017.1.26 이전에 등록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갱신일까지 최소자본금 및 손해배상책임 관련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)

< 대부업자의 최소자본금 기준(법 §3의5 및 영 §2의8) >

- ▶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: 자기자본 3억원
- ▶ 사·도 등록 대부업자 : 법인 자기자본 5천만원 / 개인 순자산액 1천만원
- ※ 자기자본 : 대차대조표 상 납입자본금, 이익잉여금 및 자본잉여금의 합계액에 결산상 오류에 따른 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(영 §2의3③)
- ※ 최소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의무적 등록취소(법 부칙 제5조제3항)

< 손해배상책임 관련 예탁금액(보험 최소 보장금액) 기준(법 §11의4 및 영 §6의9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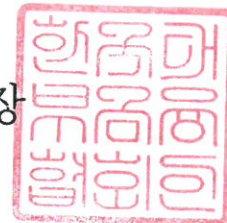
- ▶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(중개)업자 : 5천만원
- ▶ 사·도 등록 대부(중개)업자 : 1천만원
- ※ 예탁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영업 전부정지 6개월(시행령 별표2 제2호 노목)

3. 회원사에서는 불임 참고자료를 통해 최소자본금 요건 및 손해배상책임 이행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요건구비 현황을 확인하여 업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불임 : 참고자료 1부.

문의 : 기획조사부 한성택 과장(전화 02-3487-5800, 내선 115). 끝.

한국대부금융협회장



수신처 : 가교에이엠씨대부 등 473개 회원사 대표이사

붙임.

□ 자기자본 요건 확인 관련

- 대차대조표 상 “자본” 으로 확인. 금융위원회 등록업체의 경우 (자기)자본 항목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함.

〈대차대조표 예시〉	
자산	부채 (타인자본)
I. 현금 및 예치금	I. 차입부채
II. 유가증권	II. 기타부채
III. 대출채권	자본 (자기자본)
IV. 유형자산	I. 자본금
V. 기타자산	II. 자본잉여금
	III. 자본조정
	IV. 기타포괄손익누계액
	V. 이익잉여금

- 자기자본 요건 확인 관련 증빙서류(등록신청서 구비서류 참조) : 감독기관의 자기자본 요건 충족자료 요청 시 참고

가. 법인의 경우

- 1) 대부업등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신규 설립한 자 :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, 자본금납입 증명서
- 2) 다른 영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대부업등을 겸영하려는 자
 - 가) 외부감사 대상 법인인 경우 :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, 감사보고서
 - 나)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: 세무서에서 발급한 “표준재무제표증명” 서류, 다만, “표준재무제표증명”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재무상태 확인이 가능한 회사 결산보고서 등 기타 서류(대표이사의 확인서 또는 대표이사 원본대조필 첨부)

나. 개인의 경우

- 1) 부동산 : 영업소 등기부등본(공시가격 포함)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- 2) 동산(차량 등) : 자동차 등록증 등 동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
- 3) 현금 및 예치금 : 예금잔액증명서(공시가격 또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이상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야 함) 1부
- 4) 기타 자산 : 기타 자산의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
- 5) 부채 총계 : 부채증명서 등 부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

□ 최소자본금 요건 관련 규정

대부업법 제3조의5(등록요건 등)

-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(시·도지사 등록)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1.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(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)을 갖출 것. 다만,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(금융위원회 등록)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2. 1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. 다만, 대부중개업만을 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대부업법 부칙 제5조(등록요건 및 임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)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등은 대부업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부업자의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8(자기자본)

- ①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(시·도지사 등록)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
 1.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: 5천만원
 2. 등록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: 1천만원
- ② 법 제3조의5제2항제2호(금융위원회 등록)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"이란 3억원을 말한다.
- ③ 법 제3조의5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자기자본(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순자산액)의 산정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

□ 손해배상책임 이행 관련 규정

대부업법 제11조의4(거래상대방에 대한 배상책임)

- ① 대부업자등은 대부업등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- ② 대부업자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.

대부업법 시행령 제6조의9(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)

- ① 대부업자등은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을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에 보증금으로 예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등록기간 동안 이를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한다.
 1. 시·도지사에게 등록한 경우: 1천만원
 2.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우: 5천만원